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가이드라인

2023. 1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목 차

제1장 복수의결권주식의 의의와 운용 법제	1
1-1.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그 제한가능성	3
1-2. 복수의결권주식의 개념과 필요성	5
1-3.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운용 체계	7
제2장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11
2-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적격벤처기업	13
2-2. 복수의결권주식 배정 적격창업주	15
2-3. 정관상 근거 규정과 등기	17
2-4. 주주총회의 가중된 특별결의	20
2-5.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과 등기	22
2-6.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등	26
2-7.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특례	31
제3장 복수의결권주식의 활용	33
3-1. 복수의결권 행사와 제한	35
3-2.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대한 공개매수	36
3-3.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37
제4장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39
4-1.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의의	41
4-2.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사유	42
4-3. 보통주 전환 사실의 통지	45

목 차

제5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 등	47
5-1. 직권조사	49
5-2. 일반인의 신고	49
5-3. 복수의결권주식의 허위발행죄	50
Q&A	51
부 록	55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	57
2. 상법 관련 규정	69
3. 상업등기규칙 관련 규정	8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87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관련 규정	89

제1장 복수의결권주식의 의의와 운용 법제

1-1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그 제한가능성

■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

-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및 ‘주주유한책임’을 본질적인 요소로서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상법 제3편(회사)에 자세히 규정
 - 상법 제3편은 회사와 관련된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
 - 회사법이 허용하는 5종류 회사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대표적인 유형
- ‘자본금’이라 함은 사원의 출자에 의해 이루어진 일정한 기금으로서 회사재산 성립의 기초가 됨
 - 주식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담보는 회사의 자본금이 유일
 -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회사의 경제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주식’이란 법률상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의미와 주주권, 즉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주주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뜻함
 - ‘자본금의 구성단위’라 함은 주식회사가 그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주식이라는 균일한 비례적 단위로 세분한 것을 말하며, 상법에서도 자본금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이 자본금의 구성단위임을 밝히고 있음 (상법 제451조)
 - 단, 상법은 액면가를 규정하지 않은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이 경우 자본금과의 연결 관계는 희석되고 주주권의 의미만이 명확하게 남게 됨
 - 주주평등의 원칙은 각 주식이 표창(表彰)하는 권리의 내용이 동일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률관계에 관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
 - 주식은 표준화된 상품의 일종으로 각 주권의 권리를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거래의 신속성을 도모하여 자본시장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주주유한책임이란,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할 뿐임을 의미함 (상법 제331조)
 - 유한책임원칙에 따라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인수가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즉, 출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개인재산으로 채무 변제나 자본 충당 등의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판례 1

-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제한

-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인 ‘자본금’, ‘주식’, ‘주주평등의 원칙’은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함



법률 1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판례 2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자체가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이를 공공복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도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결정)

1-2 복수의결권주식의 개념과 필요성

복수의결권주식의 개념

- ‘복수의결권주식’(multi-voting share)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함
- 우리나라 상법은 명문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상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은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369조, 제409조)
- 반면, 미국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정관자치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중국(홍콩 포함),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포함하는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허용하고 있음.
- 이 가이드라인에서 의미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의미’함



참고 1

-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hares)은 회사가 의결권의 수가 다른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이 1개 미만(의결권 제한·배제 주식)이거나 복수(가중의결권주식)인 주식을 의미
- 복수의결권주식은 차등의결권주식 중 복수의 의결권을 갖는 가중의결권주식을 의미하며, 벤처기업법은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

복수의결권주식의 필요성

-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창업주가 안정적인 경영권(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 비상장 벤처기업은 창업주의 아이디어와 혁신성에 기반한 고위험 사업을 영위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감내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등 일반적인 회사와는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음
 - 이처럼, 고성장하는 벤처기업은 투자를 통한 외부 자금 유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투자는 필연적으로 창업주의 지분 희석을 초래하며 경영권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음

- 경영권 불안정이 유발되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됨
- 결국, 고위험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라는 특징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 안정도 요구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이 필요하게 됨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창업주는 적은 자본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배당 및 자본이득을 향유하는 지위로 변하게 됨
- 이러한 변화는 단순 창업주와 투자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옴



판례 3

-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틀어 경영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3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운용 체계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예외

- 벤처기업법은 상법 제369조의 1주 1의결권의 예외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률 2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1조(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벤처기업법은 상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벤처기업법에 의해서만 가능

적용 대상의 제한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벤처기업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한정됨
 -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식회사여야 함은 물론이고,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음
 - 또한,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미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 이후이며, 주식 분산으로 많은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금지됨
- 복수의결권주식은 외부 자금 유입에도 창업주의 경영철학과 혁신성을 유지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보유 자격을 창업주에 한정하고 있음
- 고성장 벤처기업의 혁신성을 판별하기 위해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외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것을 요구함

■ 엄격한 발행 통제 ■

- 주주가 갖는 주주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며,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주주의 주주권에 대한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재산권자인 주주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음



판례 4

- 주주권은 비록 주주의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질권 설정·압류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다른 한편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결의)·수익(담보제공)·처분(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바34 전원재판부 결정)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통해 규율되어야 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발행되어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정관 변경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중된 특별결의)가 필요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함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의 의미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적법 발행에 대해 사전적으로는 회사의 주주와 이사회를 통해 규율하고, 사후적으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해 규율하려는 것임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은 비상장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음
-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 허위발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벤처기업법 제32조)

■ 엄격한 활용 통제 ■

- 우리나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예외적인 목적에 따라 도입된 만큼 활용 상의 제한 사항이 존재함
- 영구적 지배권의 확립이나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10년이라는 명시적인 존속기한을 두고 있으며, 상속·양도·이사 사임·상장 후 3년 경과 및 대기업집단 진입 등 특정 상황에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 복수의결권 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보수와 같이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및 회사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당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지도록 제한됨

제2장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2-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적격벤처기업

적격벤처기업의 의의

-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며, 상법상의 의결권 제한 규정과 달리 특정인의 의결권을 증가시켜 준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우려가 존재함
- 또한,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이유가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므로 해당 목적에 맞는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제1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2020. 10. 16.)

적격벤처기업의 판단기준

- 벤처기업법 제15조 및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적격(qualified)벤처기업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여야 한다.



참고 2

-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거래를 위해 개설된 시장으로 여기서는 주식회사의 주권을 거래하는 주식 시장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의미함
- 거래소가 개설한 주식시장은 아래와 같이 3개가 존재
 - ① 유가증권시장(KOSPI)
 - ② 코스닥(KOSDAQ)
 - ③ 코넥스(KONEX)
-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에서는 적격벤처기업의 요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을 투자금이라는 지표로 확인함과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에 반영한 것임



참고 3

- 벤처투자자 벤처기업에 단계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창업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을 줄이기 위한 것임
- 창업주는 중간 실적에 따라 다음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운영에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벤처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음

- 벤처기업법은 그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창업 이후 누적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마지막 투자가 50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
- 여기서 투자는 벤처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인수”를 의미하며, 창업주의 지분 감소를 요구하므로 마지막 투자는 지분투자(equity)여야 함
- 투자금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창업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투자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이는 친인척 등 경제공동체의 투자를 이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법률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 원을 말한다.
 -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 원을 말한다.



법률 4

「상법 시행령」

-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④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6촌 이내의 혈족
 - 다. 4촌 이내의 인척
 -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2-2 복수의결권주식 배정 적격창업주

적격창업주의 의의

- 벤처기업법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유능한 창업주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적격창업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적격창업주의 판단기준

-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창업주의 요건은 아래와 같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5항)
 - i)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 ii)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 iii)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iv)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 설립 이후에 참여하게 된 주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배정이 불가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창업주가 직접 자신의 능력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므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을 요구함
- 벤처기업법은 제3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어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복수의결권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는 3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의 의결권을 합하여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을 창업주(이른바 공동창업주)로 보고 있음

경영권 불안정의 판단 기준

- 벤처기업법은 가장 마지막 투자를 받아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거나, 100분의 30 미만의 의결권을 갖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즉, 5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갖는 마지막 투자를 받기 전에 창업주는 100분의 3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최대주주여야 함
- 마지막 투자로 인해 지분율이 하락하여야 하므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분투자로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



참고 4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요건 확인 요령

<p>① 비상장 벤처기업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을 것 -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것
▼	
<p>② 창업주 요건을 갖출 것 (공동창업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발기인(설립자)일 것 - 발행 시점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 실형이 끝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 마지막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3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	
<p>③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이후 누적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
▼	
<p>④ 마지막 투자에 의해 창업주 의결권이 하락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투자가 지분투자일 것 - 마지막 투자로 인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

2-3 정관상 근거 규정과 등기

정관 규정 요건의 의의

- 정관은 회사의 단체법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즉 회사의 자치법규를 의미하며 형식적으로는 그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킴.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작성되어야 함 (상법 제289조)
-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전(前) 단계에 복수의결권의 발행에 관하여 미리 수권(authorization) 하도록 강제하는 것
 - 정관은 등기사항이므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근거를 정관에 마련한다는 것과 아울러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시(公示)하는 효과가 있음
 -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됨에 따라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변동하는 것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정관 기재 사항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에 자세하게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정관상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벤처기업법은 일종의 공시를 위하여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2항)

- i)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 ii)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 iii)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 iv)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 v)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 vi)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
- vii)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가지는데, 신주인수권의 예외로 창업주에게만 허용되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발행 절차, 의결권의 수, 존속기한 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관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정관 변경 절차

- 벤처기업법은 정관에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정하는 규정을 두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어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사항을 회사 설립시 원시정관에 규정할 수는 없음
 - 상법과 벤처기업법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i)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 (상법 제362조, 제390조)
 - ii) 주주총회 소집통지 (상법 제363조)
 - iii) 주주총회 개최 및 가중된 특별결의*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4항)
-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

[자료 1] 복수의결권주식주식의 발행을 정한 벤처기업의 정관규정(예시)

정 관
<p>제00조(복수의결권주식) ① 본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11 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5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단,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6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창업주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에의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p> <p>③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한다.</p> <p>④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는 〇〇〇주로 한다.</p> <p>⑤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는 〇〇개로 한다.</p> <p>⑥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〇〇년으로 한다.</p> <p>⑦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p>

정관변경등기

- 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음
 - i) 주주총회의 명칭
 - ii) 주주총회 개최일시와 개최시각, 개최지와 장소
 - iii) 총 주주의 수와 총 주식의 수, 출석주주와 그 주식의 수
 - iv) 의장의 개회 선언
 - v) 의사의 진행요령과 결과
 - vi) 폐회 선언 및 폐회 시각
 - vii) 의사록 작성 연월일



참고 5

- 의사록의 진행요령과 결과에는 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 이유 설명, 토론 및 의견의 요지, 결의의 방법과 그 결과, 결의의 성립 여부, 결의의 내용, 결의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의사록을 작성한 뒤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상법 제373조)

2-4 주주총회의 가중된 특별결의

주주총회결의의 대상

- 벤처기업법은 장래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된 이해관계가 있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관에 근거를 마련하는 주주총회와 실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를 모두 규정하고 있음
 - 정관 변경 주주총회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주주총회는 모두 가중된 특별결의를 요구하므로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3항)
 - i)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 ii)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 iii)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 iv)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참고 6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정관에 명시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의 총수)”에 여분이 남아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정관에서 규정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만주이고 발행된 주식의 총수가 1만주라면, 복수의결권주식을 새롭게 발행하고자 하더라도 신주의 여분이 없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주주총회결의의 요건과 절차

-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정관 개정 안건 및 실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안건 모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
 -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者)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상법 제368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배정대상자는 주주이므로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판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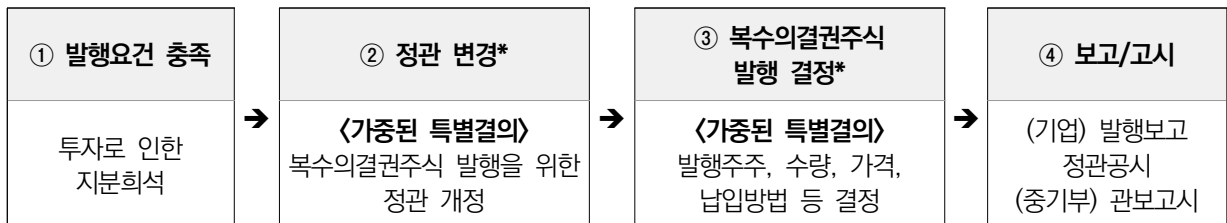
-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상법상 특별 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지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음
(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만약 주주총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만들어낸 주주총회의 가중된 특별결의를 빙자하여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하였다고 하는 경우 이는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음



참고 7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 정관 변경과 발행 결정은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의결 가능

2-5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과 등기

납입의 방법

- 적격창업주는 배정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하여 현금납입, 채권상계 및 보통주 대납(代納)이 가능함
- 상법은 자본금충실의 원칙상 주식에 대해 현금에 의한 전액납입을 요구
(상법 제421조 제1항)
- 회사가 성립한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의 동의를 있으면 금전 이외에도 신주인수인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음 (상법 제421조 제2항)
 -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 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것
 - 이처럼 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주식화'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채의 자본화'가 이루어지는 것임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총주주의 동의하에 보통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8항)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과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 규정의 특례
 - 보통주를 복수의결권주식의 대금으로 납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1주에 1개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보통주식을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전환하는 효과
 - 적격벤처기업이 적격창업주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적격창업주가 그 주식의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경제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경우라면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사실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허용하는 제도
 - 단, 다른 주주 1인만 반대하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의 대금을 보통주식으로 납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금전납입을 하여야 함
 -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려는 적격창업주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4항)
 - i) 납입하려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출할 것
 - ii)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금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납입기일 내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인도할 것

■ 보통주 납입 특례(1): 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규정 적용배제

- 자기주식이란, 특정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주식 거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아우르는 의미
-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 자신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다시 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가 자기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됨
 -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그 재원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여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 복수의결권주식의 대금을 보통주로 납입하는 경우 그렇게 납입된 주식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이 되며, 납입 과정은 자기주식 거래에 해당함
 - 만약 자기주식에 대한 상법상의 엄격한 규제를 그대로 수용하여야 한다면 복수의결권주식의 대금을 보통주식으로 납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될 것이므로 벤처기업법은 적격창업주의 부담을 줄여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대금납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납입된 보통주에 대해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함

■ 보통주 납입 특례(2): 상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 규정의 적용배제

-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신주인수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함
- 상법은 현물출자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평가되었는지 검사인이 평가하거나, 감정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의 가액을 감정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현물출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음 (상법 제422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 대금으로 보통주를 납입하는 상황에서 검사인의 검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받게 되면 비용이 초래되는 만큼 벤처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함
 - 복수의결권주식은 사실상 의결권의 수를 달리하는 보통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법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상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함

[자료 2]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예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00년 0월 0일 0시 0분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 주 총 수	10명	발 행 주 식 총 수	100,000주
출 석 주 주 수	7명	출석주주의 주식 수	90,000주

의장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건

의장은 2000년 0월 0일 00벤처캐피탈로부터 50억원을 투자받아 누적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최대주주인 창업주 000가 소유한 의결권이 30%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정관 제00조에 의거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구한바 발행주식총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 000
-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 0,000주
-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액면가와 발행가액 : 액면가 0,000원 / 발행가액 0,000원
-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의결권 : 00개
- 주금납입일자 : 2000년 0월 0일
- 주금납입금액 : 000,000원
- 주금납입장소 : 00은행 00지점
- 주금납입의 방법 : 현금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1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납입할 수 있음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00년 0월 0일

주식회사 000
00도 00시 00대로00

의장 대표이사 000 (인)
사내이사 000 (인)

■ 신주발행등기 ■

-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하여 주금을 납입한 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에 복수의결권주식의 주주가 되므로 납입일 다음날에 등기하여야 함

(상법 제317조, 제183조, 제373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음)를 제출하여야 함

2-6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등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보고 및 고시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오남용을 막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4, 시행령 제11조의10)
 - 복수의결권주식 보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i)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 ii)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 iii)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 및 보고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보고(중요사항 변경 보고)하여야 함
 - 벤처기업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보고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여야 함
- 중소기업부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국민 및 잠재적 투자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사회를 통한 오남용의 감시도 가능하게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 발행, [] 중요사항 변경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벤처기업의 정관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각 1부 3.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내역 등의 비치 및 공시

- 복수의결권주식의 유무는 주주, 채권자 및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 내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4, 시행령 제11조의10)
- 비치 및 공시의 시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며, 비치의 기한은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시점까지임.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i)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 ii)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 iii)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 iv)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보고 등 의무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 8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행정법규의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비행인 경우 부과되는 것
 -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재산형에 해당하지만, 벌금과는 달리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 법정주의 등의 규율 대상이 아님
- 위반 정도에 따라 보고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최대 500만원, 비치 또는 공시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료 3]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	100	200	500
나. 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500		
다. 법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			
1)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2-7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특례

-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법에 따른 특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Peter Pan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음
- 더욱이, 복수의결권주식의 경우 회사의 경영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급격한 변동이 초래될 시 회사와 주주에게 심각한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이에, 벤처기업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미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유효함
- 다만, 이는 보통주 전환 사유에 대한 특례가 아니므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됨

제3장 복수의결권주식의 활용

3-1 복수의결권 행사와 제한

■ 네거티브 규제와 복수의결권주식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만을 허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 방식의 반대개념으로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을 뜻함
 -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음

■ 의결권제한 사유 개관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주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가지지 못한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안건에 대하여 1주당 의결권을 1개로 제한하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3)

- i)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ii)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i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 iv)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v)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 vi)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vii)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 viii)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2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대한 공개매수

- 공개매수(takeover)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대체거래소)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 즉, 특정 기업의 경영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장외에서 일정한 가격에 공개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행위를 뜻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과거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를 한 후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확보하게 되면(또는 이미 5% 이상을 확보했다면)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개매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상장회사를 전제로 하며,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상장한 경우 상장 후 3년이 지난 날에 그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장 3년 이내까지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공개매수가 특정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감안하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의 수가 아니라 의결권의 수를 기준으로 공개매수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봄

3-3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란,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거나, 대량으로 보유한 자의 보유량이 일정량 이상 변동된 경우 그 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 대량보유 보고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하여 주식 보유자 등의 경쟁 의도를 조기에 알리고, 경영자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배권 변동을 공개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 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보유상황 및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대량보유 보고는 보고 사유가 발생한 후 5 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하여야 함
- 대량보유 보고 제도 또한 경영권의 변동을 알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봄
 - 이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상장 벤처기업의 대주주 등은 주식등의 수를 기준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의 수를 기준으로 대량보유 보고를 하여야 함

제4장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4-1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의의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경영권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상법의 예외로서 적격벤처기업의 적격창업주에게 한하여 허용되는 트레이드로 보편성을 가질 수 없음
- 즉,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복수의결권주식 활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게 하여 오남용 등을 예방하고 있음



법률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만료일의 다음 날
2.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 상속일이나 양도일
3. 창업주가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 상실일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통지일
6.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②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4-2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사유

■ 보통주 전환 사유 및 그 시기 ■

-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에 보통주로 전환됨
 - 복수의결권주식에 존속기간이 있는 이유는 창업주의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막기 위함임
 -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일이나 양도일에 보통주로 전환됨
 - 벤처기업법이 적격창업주 요건을 규정한 이유가 유능한 창업주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 만큼 타인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 즉, 벤처기업법상의 복수의결권주식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이전 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므로 편법상속이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이 활용되는 것이 방지됨
- 창업주가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상실일에 보통주로 전환됨
 - 창업주가 이사의 직을 상실하게 되면 벤처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경영권 안정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
 - 즉, 벤처기업법은 경영과 무관한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이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에 보통주로 전환됨
 - 상장은 회사의 주식 분산을 초래하며, 이는 많은 소액주주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발생으로 이어짐. 즉, 비상장 당시와는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상장 즉시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경영권 불안정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를 우려한 벤처 기업들이 상장을 꺼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후에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참고 9

■ 상장 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예시)

	발 행	상 장	⇒	보통주 전환시기
A사	2024년 발행 존속기간 : 7년	2026년	⇒	2029년 존속기간이 남았지만(~'31년), “상장 후 전환” 요건으로 2029년 전환
B사	2024년 발행 존속기간 : 5년	2028년	⇒	2029년 보통주 전환 유예는 3년이나(~'31년), “존속기간 만료”로 2029년 전환

○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일에 보통주로 전환되며, 동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통주로 전환됨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회사(계열사)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벤처기업도 아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단서)

-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은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벤처기업 법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재벌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통주로 전환하게 한 것임

- 벤처기업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지일에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함



참고 10

■ 사후변경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사후변경의 유형	전환 여부
상속 또는 양도	즉시 전환
창업주의 이사 사임	
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	
상장	상장 후 최대 3년까지 유효
벤처기업 지위 상실	이미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한까지 계속 유효

■ 허위·부정 발행에 대한 처리

-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 제2항)
- 이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음

4-3 보통주 전환 사실의 통지

■ 전환 사실의 통지 및 공고 ■

-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은 경영권의 심각한 변동을 유발하므로 이해관계자인 주주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보통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 제3항)
 - 벤처기업은 통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i)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날짜, 전환된 수량 및 전환된 사유
 - ii)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일과 발행수량,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 주식회사의 공고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하여야 함

(상법 제289조)

제5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 등

5-1 직권조사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체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6)
 - 복수의결권주식의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인정하는 것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그 외,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 및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함
- 직권으로 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5-2 일반인의 신고

- 누구라도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사항이 회사 내부관계이고, 감독부처에서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사항이 많으므로 신고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신고인은 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물론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3 복수의결권주식의 허위발행죄

허위발행죄의 내용과 특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32조)
 - 주식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임 (형법 제214조)
- 본 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임
- 허위발행죄는 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에 해당하여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구성요건으로 충족됨

허위발행죄의 구성요건

- 허위에 의하여 발행되는 경우로는 진실에 반하여 발행하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정관상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정관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예를 들어, 정관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음

Q & A

알려줘요!



- Q**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을 받은 벤처기업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지분투자가 아닌 전환사채 형식의 투자인데, 이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요?
- A**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1항 제2호는 마지막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가 소유한 지분의 하락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이 마지막에 받는 투자는 반드시 의결권의 변동이 수반하는 지분투자(equity)여야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전환사채 형식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기 때문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Q** 벤처기업 설립 이후 제3자가 그 벤처기업을 인수하여 최대주주로서 장기간 성장을 주도해 온 경우 그 사람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할 수 있나요?
- A**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5항 제1호는 창업주의 요건으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작성된 원시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설립 이후 최대주주가 된 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Q** 저희 회사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한가요?
- A** 벤처기업법 제15조 및 제16조의11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므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Q** 창업주가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를 유치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요?
- A**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1항은 투자유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유치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자유치를 예상하고 미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Q** 복수의결권주식을 가진 창업주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보통주를 상속받나요,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받나요?
- A**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게 되면 상속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받게 되는 주식은 보통주식입니다.
- Q** 복수의결권주식을 소유한 창업주가 개인적 사정으로 이사직을 상실하였다가 6개월 후 다시 사내이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가 가지고 있던 복수의결권주식은 유효한가요?
- A**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사의 직을 상실한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실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향후 다시 이사의 직을 맡게 되더라도 이미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후이고, 보통주식이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주식입니다.

부 록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

법 률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 후단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창업주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제6항에 따른 창업주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
- 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⑧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2.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3. 창업주가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6.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②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4.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8.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④ 창업주가 법 제16조의11제8항 전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법 제1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납입하려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출할 것
2. 법 제1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가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납입기일 내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인도할 것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날짜와 전환된 수량
- 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

2.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과 발행수량

나.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변경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4.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주주명부

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⑤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치 및 공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의 기한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21조(과태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3. 삭제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행위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	100	200	500
나. 법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500		

다. 법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	
1)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비치 또는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 시행규칙 ■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23.11.17.>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중요사항 변경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보고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보고내용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및 발행수량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기재)	
	성명	발행수량 (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	
	창업주 보유 보통주 납입 여부 [여 / 부]	

전환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전환일자 년 월 일
	전환사유

누적 투자유치금액 및 창업주 지분을 변화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가 여럿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모두 기재)

투자일자	투자유치금액 (특수관계인 포함)	투자유치금액 (특수관계인 제외)	투자 전 창업주 지분율	투자 후 창업주 지분율
	원	원	%	%
	원	원	%	%
계	원	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 발행, [] 중요사항 변경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벤처기업의 정관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각 1부 3.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

상법 관련 규정

법 률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계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 ② 삭제
 -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제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계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황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 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⑦ 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제2항·제394조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제1항제9호·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을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填)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 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542조의4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집행임원·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⑤ ~ ⑥ (생략)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상업등기규칙 관련 규정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법 률

-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교환·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 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관련 규정

법률 시행령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출자자 간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의 친족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이라 한다)

2) 독립경영친족과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친족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관련자”라 한다)

나.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각 회사(이하 “비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는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

2)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친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 1)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거래
- 2) 비친족측계열회사와 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 3) 친족측계열회사와 동일인(동일인의 친족 중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제외한 나머지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이라 한다)가 동일인과 같은 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일 것

나.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 1) 독립경영임원
- 2) 독립경영임원과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임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관련자”라 한다)

다. 기업집단에서 임원측계열회사를 제외한 각 회사(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비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그 밖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해당할 것
- 2) 독립경영임원이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라.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임원 외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마.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다음의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일 것

1) 각 비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

2) 각 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의 회사에 대해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5호의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 제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이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와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에 모두 없어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또는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 목의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가.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나.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 제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해당 회사가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일 것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7년 [해당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일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라목 및 마목에서 같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라.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마. 나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해당 회사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 ⑦ (생략)